

고드리고, 또 아울러서 서울特別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 改正을 위한 提案說明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中小企業의 技術開發, 또 自動化, 情報化를 促進해서 國際競爭力을 強化하기 위한 여러 가지 事業을 94年度부터 推進 中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市 所在 中小企業의 施設 資金과 運轉資金을 支援하기 위해서 그 支援 對象을 확대하는 등 그런 실질적인 中小企業의 經濟活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條例 改正案을 上程하게 되었습니다.

그 上程된 條例 改正案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첫번째 事項이 創業者를 支援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事業性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擔保力이 없는 創業者는 지금 현재 條例에 따르면 資金支援 對象에서 除外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擔保力이 부족한 創業者들에 대해서 資金 受惠範圍를 擴大시켜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저희들 中小企業育成資金을 使用함으로써 利子負擔을 경감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有望 中小業體에 대한 創業支援을 可視化 하는 데 그 趣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創業投資會社에 基金을 融資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事項은 지금 현재로서 條例에 따르면 銀行法上的 金融機關에 대해서만 저희들 中小企業育成基金을 預置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利子率이 높은 第2金融圈에 의해서 設立된 金融機關에도 基金을 預置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높은 金利가 발생되어 가지고 결국 基金을 增殖시키는 效果가 있겠다, 이런 趣旨에서 지금 一般銀行 外에 第2金融圈에도 저희들 基金을 預置할 수 있도록 條例를 改正하려고 지금 上程이 되어 있고,

세번째로는 地方財政法施行令이 改正됨에 따

라서 從前的 基金管理 擔當公務員이 課長에서 局長으로 上向調整 되는 그런 內容입니다.

이것은 法令改正에 따라서 隨伴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事項이 지금 條例 改正案에 포함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條例가 改正이 되면 施行規則에서 지금까지 中小企業銀行에서만 融資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主去來銀行 어디에서든지 融資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運轉資金의 경우 償還期間이 1年 거치 2年에서 1年 거치 2年 半으로 6個月이 연장되고, 그 다음에 運轉資金의 融資 上限額이 1億원에서 2億원으로 增額된다는 그런 事項을 참고로 報告 올립니다.

아무쪼록 서울市 中小 製造業體에 대한 構造調整事業에 受惠對象의 擴大를 통해서 地域 經濟의 活性化를 도모할 수 있도록 委員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支持와 協助를 부탁드립니다.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敏國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李贊穆 專門委員 李贊穆입니다.

(報告)

1995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중소기업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투자회사,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창업,

<p>사업전환에 대하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음. (안 제2조)</p> <p>○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위탁관리 금융기관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p> <p>○용자대상 범위에 창업투자회사를 포함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자에 대하여 무담보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안 제8조 및 제12조)</p> <p>○기금관리 담당공무원의 직급 상향 조정과 관직 변경(안 제19조)이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음.</p> <p>3. 관련 근거법규</p> <p>○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p> <p>○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p> <p>4. 검토의견</p> <p>가. 기금조성 현황</p> <p>○'94년도말까지 서울시의 중소기업지원 기금조성 총액이 1,848억원에서 이 중 운전자금에서 자치구 및 상업은행의 출연금을 포함하여 1,143억원이 조성되었고, 지원액은 1,246억원에 1,808개 업체가 지원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참조)</p> <p>○시설자금(구조개선자금)은 93년 6월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 시책 사업으로 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서울시 일반회계의 예산 절감액 627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처음으로 시설자금 채원으로 마련되어 94년도말 현재 705억원의 자금지원 실적 이 있었습니다.</p> <p>○본 건 조례개정안에서는 시설자금의 용자 대상을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사업전환사업 등에 용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p> <p>나. 검토의견</p> <p>○본 건 개정조례안은 시설자금의 용자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지원대상 중소기업자의 기준을 명백히 하기 위하</p>	<p>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음.</p> <p>○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지정은 현재는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2금융권에 속하는 단기금융회사 및 신탁회사에 까지 기금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에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p> <p>○이 중에서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의 공통된 사항은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과 같이 여·수신 업무와 예금이자확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음의 할인,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의 매매차액에 의하여 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볼수있습니다.</p> <p>○또 단기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업무의 영역은 단기금융법 제7조에 의하면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매매, 어음의 중개 등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p> <p>○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는 은행법 제4조에 의하여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신탁회사는 금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할때 공기관의 기금을 이자수익을 전제로 하는 회사법인에게 위탁관리케 한다는 것은 기금증식을 위한 기금예치 금리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주식투자, 어음할인 등 취급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위험부담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며,</p> <p>○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기금설치운영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기금 증식의 명목으로 자금을 단기금융회사 또는 신탁회사에 예치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p>
---	---

생각합니다.

즉,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와,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탁회사의 기금 위탁관리는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현재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의 관리·운용을 시설자금 관리·운용으로 명칭을 바꾸고, 용자 대상자를 사업전환 중소기업자와 담보력이 없는 창업중소기업자에게 창업투자회사를 통하여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창업투자회사에서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성은 높은데도 담보력이 없어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창업자의 경우 서울시장은 통상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에 자금을 용자해줌으로써, 창업자는 창업투자회사로 부터 담보없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창업자에 대한 자금수혜 확대가 기대됩니다. (안 제8조)

○기관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93.9.23.)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관직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敏國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本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迎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迎春委員 서울特別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 및 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잘 說明도 듣고 우리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도 잘 들었습니다.

主要骨子を 보니까 用語 改正, 또 基金의 委託機關의 擴大, 또 擔當公務員의 上位 調整, 또 無擔保 支援에 대한 根據 마련 등이 있는데 다 이해가 잘 됩니다만 여기에서 보니까 中小企業體를 中小企業者로 業體를 者

로, 個人으로 바꿨는데 이를 통해서 어떤 惠澤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연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業體를 者로 바꿨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禹爽 여기에 보면 앞으로 創業投資會社에 저희들이 이제 支援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創業者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創業投資會社에다 支援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創業者를 발굴해서 미리 사전에 選定을 받아서 融資를 해 주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支援對象企業이 있고, 支援對象事業이 있습니다.

그래서 支援對象企業은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條 規定에 의한 創業者로서 業歷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이고, 그 다음에 支援對象事業의 경우에 者가 되고 그것을 포괄로 해서 이것은 創業支援法 第3條의 業種으로 業歷 7年 이내의 創業者, 그러니까 그런 業體와 創業者, 그것을 전부 다 망라해서 支援해 줄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기 위해서 用語를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商工課長 崔 領 商工課長이 잠깐 보충드리겠습니다.

이 用語는 저희들도 맨처음에 생각을 해 봤는데요, 단순히 法上用語입니다. 中小企業者라고 中小企業法에 되어 있고, 創業投資會社는 創業投資會社로 法上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따르는 內容입니다.

물론 局長님이 말씀하신 그런 背景은 있지만 저희들은 단순히 母法의 用語에 따라서 이를 정의했습니다. 그 차이는 현재 전혀 없습니다.

○李迎春委員 昨年 11월에 中小企業法이 改正되었죠?

○商工課長 崔 領 네,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에 보면 中小企業者로 지정이 됩니다. 또 創業投資會社라고 名稱이 되어 있습니다. 별 다른 구분이 없습니다.

○李迎春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敏國 權赫柱委員님 質疑해 주시기